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68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 ·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필요성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개인정보처리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로136길 5-8(논현동)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28명
- 인력현황 : 14명

(단위: 명)

총인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사
14	1	2	2	6	1	1

- 운영시간 : (월~금) 08시~22시, (토) 08시~18시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옥상 (연면적 407.23㎡)

구분	면적(㎡)	주요용도
옥상	24.25	하늘공원
2층	106.42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1층	209.92	생활실, 맞춤형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쉼터, 화장실, 다용도실 등
지하1층	66.64	보일러실, 창고

- 현장사진



- 위치도



-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3. 1. ~ 2031. 2. 28.)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 원가계산서

구분		금액(원)	구성비(%)	산출근거	
① 인건비 (노무비)	제수당	기본급	338,006,000	51.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연장근무수당	17,460,960	2.6	- 근로기준법 제43조
		정액급식비	9,840,000	1.5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명절휴가비	15,429,800	2.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가족수당	1,560,000	0.2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장기근속수당	5,280,000	0.8	- 노인장기요양법 기준
		관리자수당	2,400,000	0.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선임수당	1,800,000	0.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운전수당	1,200,000	0.18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프로그램 수당	600,000	0.09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업무수당	6,600,000	1.00	- 법인편성기준
		지출원가	보험료	퇴직충당금	33,348,060
국민건강보험료	14,186,260			2.2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보험료	18,007,950			2.7	-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료	7,003,090			1.06	-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료	3,201,410			0.4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장기요양보험	1,837,120			0.28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 계		477,760,650	72.5		
② 운영비 (경비)		여비(국내/국외)	0	0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교육훈련비	4,381,000	0.7	
		임차료	5,576,520	0.84	
		우편통신비	1,214,520	0.18	
		유인물비	0	0	
		소모품비	9,396,200	1.4	
		수선유지비	5,383,000	0.8	
		차량유지비	11,422,140	1.7	
		공공요금 및 제세	17,433,120	2.6	
		기타경비	25,000,000	3.8	
소 계		79,806,500	12.1		
③ 사업비		101,432,000	15.4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658,999,150	100		
수입원가	④ 입장료·이용료	398,962,130	74.6	-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41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136,080,000	25.4	-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535,042,130	100	시(市) 보조금 제외	
위탁비용(A-B)		* 민간위탁비용 없음(시 보조금 포함 시 실질적 수입원가가 지출원가 초과) * 2024년도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보조금액: 79,000천원 (시비 재배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1.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현재 운영 법인과의 협약기간은 2026. 2. 28.까지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동의안의 형식 및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II. 주요 사항의 검토

-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2010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건강생활 증진사업, ▶개인정보처리,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임. 위탁계약기간은 5년(2026. 3. 1. ~ 2031. 2. 28.)으로 제출되었으며, 위탁 및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2025. 6. 12.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93.5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회계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음.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 결과(2022~2024)		
구분	세부 지적내용	조치 사항
2024	없음	
2023	없음	
2022	1. 독감보조금 수입 510,000원에 대하여 보조금수입중 시군구보조금으로 분류하였으나 시도보조금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	권고
	2. 1,2차 추경예산서 카페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을 누락하여 예산승인후 누락하지 않고 적정시점에 공고할 것을 권고	권고
	3.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상상 2/15일 박은주씨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기재오류. 지정/비지정기부금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함.	권고

(자료: 어르신복지과)

Ⅲ. 종합의견

- 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 시간 동안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돌보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관계 법령상 민간위탁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고립 방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향후 수탁자 선정 시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두루 살펴 우수한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68
----------	-----

제출년월일: 2025. 8. 14.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 가.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강남논현 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의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필요성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개인정보처리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로136길 5-8(논현동)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28명
- 인력현황 : 14명

(단위: 명)

총인원	센터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사
14	1	2	2	6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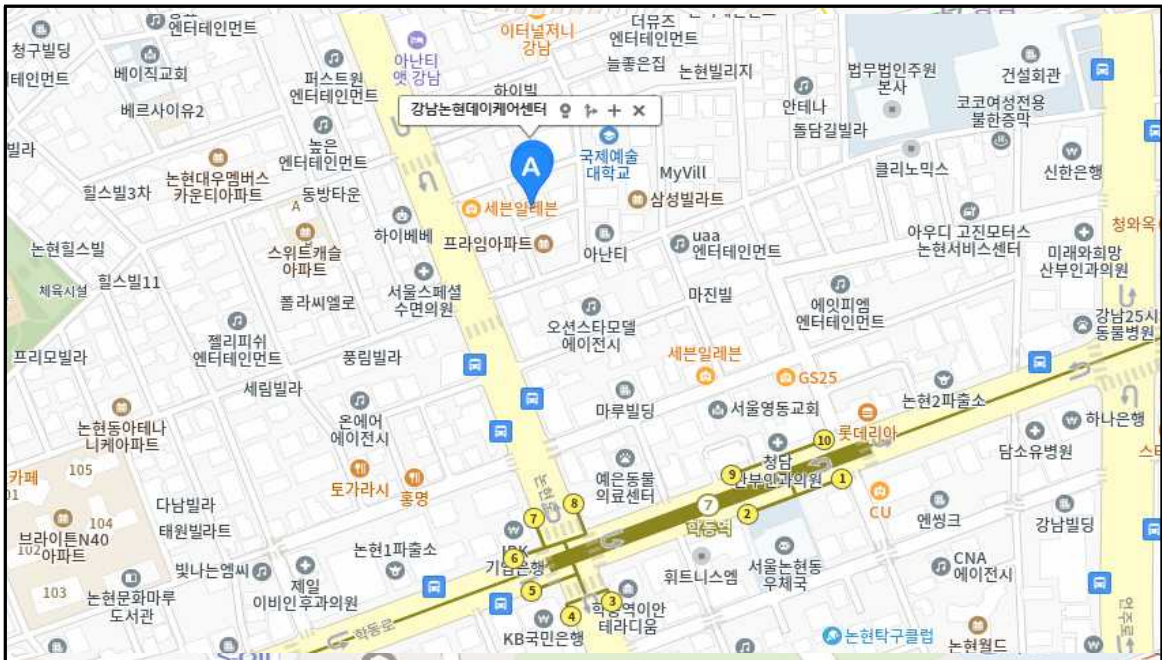
- 운영시간 : (월~금) 08시~22시, (토) 08시~18시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옥상 (연면적 407.23㎡)

구분	면적(㎡)	주요용도
옥상	24.25	하늘공원
2층	106.42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1층	209.92	생활실, 맞춤형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쉼터, 화장실, 다용도실 등
지하1층	66.64	보일러실, 창고

- 현장사진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26. 3. 1. ~ 2031. 2. 28.)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 원가계산서

구분		금액(원)	구성비(%)	산출근거	
① 인건비 (~노무비)	기 본 급	338,006,000	51.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연장근무수당	17,460,960	2.6	- 근로기준법 제43조	
	정액급식비	9,840,000	1.5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명절휴가비	15,429,800	2.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가족수당	1,560,000	0.2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장기근속수당	5,280,000	0.8	- 노인장기요양법 기준	
	관리자수당	2,400,000	0.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선임수당	1,800,000	0.3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운전수당	1,200,000	0.18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프로그램 수당	600,000	0.09	-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업무수당	6,600,000	1.00	- 법인편성기준	
지출원가	퇴직충당금	33,348,060	5.1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4,186,260	2.2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보험료	18,007,950	2.7	-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료	7,003,090	1.06	-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료	3,201,410	0.4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장기요양보험	1,837,120	0.28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소 계	477,760,650	72.5			
② 운영비 (~경비)	여비(국내/국외)	0	0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교육훈련비	4,381,000	0.7		
	임차료	5,576,520	0.84		
	우편통신비	1,214,520	0.18		
	유인물비	0	0		
	소모품비	9,396,200	1.4		
	수선유지비	5,383,000	0.8		
	차량유지비	11,422,140	1.7		
	공공요금 및 제세	17,433,120	2.6		
기타경비	25,000,000	3.8			
소 계	79,806,500	12.1			
③ 사업비	101,432,000	15.4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658,999,150	100		
수입원가	④ 입장료·이용료	398,962,130	74.6	-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136,080,000	25.4	-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535,042,130	100	시(市) 보조금 제외	
위탁비용(A-B)		※ 민간위탁비용 없음(시 보조금 포함 시 실질적 수입원가가 지출원가 초과) ※ 2024년도 서울형 인종 데이케어센터 보조금액: 79,000천원(시비 재배정)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2. 위탁계약기간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재가복지팀 행정8급 주민지(☎ 02-3423-5924)

비목별 기초계산서

1. 인건비 (노무비)

가. 기본급

(단위 : 원)

직 종	운영인력		근무기간		기준단가 (월 임금) ④	소요금액 ⑤=③×④
	담당과업	종사인원 ③	개월수 ②	누계 ③=①×②		
센터장 (2급 19호봉~20호봉)	시설운영 및 업무 총괄	1	12	12	4,539,666	54,476,000
	1) 인사 관리					
	2) 회계·예결산 관리 등					
	3) 기능보강 및 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자)					
	4) 운영위원회 진행 및 관리 등					
사회복지사 (1호봉~2호봉)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	1	12	12	2,206,667	26,480,000
	1) 대상자 및 프로그램 관리					
	2)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3) 청구 및 이용료 관리					
사회복지사 (1호봉)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	1	12	12	2,198,000	26,376,000
	1) 대상자 및 프로그램 관리					
	2) 직원교육 관리					
	3) 홈페이지, 홍보관리					
사무원 (3호봉~4호봉)	사무 관리	1	12	12	2,230,833	26,770,000
	1) 수입 및 지출결의 관리					
	2) 사무 업무(시설비품 관리 등)					
	3) 급식 관리					
주간 간호조무사	이용자 건강관리	1	12	12	2,127,000	25,524,000
	1) 건강관리실 운영					
선임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2,127,000	25,524,000
	1) 이용자 케어					
	2) 5등급, 인지지원등급 프로그램 진행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2,097,000	25,164,000
	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운행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2,097,000	25,164,000
	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보조					

운영인력			근무기간		기준단가 (월 임금) ④	소요금액 ⑤=③×④
직 종	담당과업	종사인원 ③	개월수 ②	누계 ③=①×②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2,097,000	25,164,000
	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보조					
조리사	조리실 관리	1	12	12	2,097,000	25,164,000
	1) 조리업무					
운전원	송영차량 관리	1	12	12	1,050,000	12,600,000
	1) 송영차량 운행					
	2) 시설물 관리					
야간 간호조무사	야간이용자 건강관리	1	12	12	1,050,000	12,600,000
	1) 건강관리실 운영					
	2) 이용자 케어업무					
야간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1,200,000	14,400,000
	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운행					
야간 요양보호사	이용자 케어관리	1	12	12	1,050,000	12,600,000
	1) 이용자 케어					
	2) 송영차량 보조					
계	-	14	-	-	-	338,006,000
운영인력 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하여 내부기준 수립 - 기타직 : 최저임금 및 장기요양 장근근속 기준 적용하여 내부기준 수립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기준단가 및 합계 원단위 반올림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차매 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나. 제수당

(1) 연장근무수당

(단위 : 원)

직 종	연장근무사유	근무인원 (a)	근무기간			기준단가 (시간당) (e)	소요금액 (f)=d×e
			시간(1일당) (b)	근무일수 (c)	소계 (d=a)×(b)×(c)		
사회복지사	토요근무	1	8	12	96	16,710	1,604,160
사회복지사	토요근무	1	8	10	80	16,710	1,336,800
간호조무사	토요근무	1	8	16	128	15,990	2,046,720
사무원	토요근무	1	8	12	96	16,875	1,620,000
요양보호사	토요근무	1	8	10	80	16,710	1,336,800
요양보호사	토요근무	1	8	24	192	15,780	3,029,760
요양보호사	토요근무	2	8	16	256	15,420	3,947,520
요양보호사	토요근무	1	8	10	80	16,035	1,282,800
간호조무사	연장근무	1	2.5	16	40	15,990	639,600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1	2.5	16	40	15,420	616,800
계	-	11	-	-	-	-	17,460,960

* 기준단가 산출식 = 평균임금 ÷ 209시간 × 150%

(2) 야간근무수당 : 해당사항 없음

(3) 휴일근무수당 : 해당사항 없음

(4) 연차수당 : 해당사항 없음

(5) 정액급식비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행정직	4명	12	130,000원×4명 ×12개월	130,000	6,240,000
기타직	6명	12	50,000원×6명 ×12개월	50,000	3,600,000
계	10명	-	-	-	9,84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내부기준

(6) 명절휴가비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행정직	4명	2	기본급×60%×2회	-	13,429,800
기타직	10명	2	100,000원×10명 ×2회	100,000	2,000,000
계	14명	-	-	-	15,429,8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내부기준

(7) 가족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행정직	2명	12	90,000원×1명 ×12개월 40,000원×1명 ×12개월	-	1,560,000
계	2명	-	-	-	1,56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8) 장기근속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요양보호사	4명	12	100,000×1명 ×12개월 80,000×2명 ×12개월 60,000×1명 ×12개월	-	3,840,000
조리사	1명		60,000×1명 ×12개월	-	720,000
사무원	1명		60,000×1명 ×12개월	-	720,000
계	6명	-	-	-	5,280,000

* 노인장기요양법 장기근속 수당 지급 기준 및 내부기준

(9) 관리자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센터장	1명	12	200,000×1명 ×12개월	200,000	2,400,000
계	6명	-	-	-	2,4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0) 선임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선임요양보호사	1명	12	150,000×1명 ×12개월	150,000	1,800,000
계	1명	-	-	-	1,8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11) 운전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요양보호사	2명	12	50,000×2명 ×12개월	50,000	1,200,000
계	2명	-	-	-	1,2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12) 프로그램 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주간간호조무사	1명	12	50,000×1명 ×12개월	50,000	600,000
계	1명	-	-	-	6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내부기준)

(13) 업무수당

(단위 : 원)

직 종	종사인원	개월수	산출근거	기준단가	소요금액
행정직	4명	12	기관장 400,000원 부장 200,000원 과장 150,000원 팀장 100,000원 사회복지사 50,000원	-	6,600,000
계	4명	-	-	-	6,600,000

* 법인 수당기준(업무수당 편성)

다. 상여금 : 해당사항 없음

라. 퇴직충당금

(단위 :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센터장	1	5,724,600	0	477,050	5,724,600
사회복지사	1	2,781,480	0	231,790	2,781,480
사회복지사	1	2,709,240	0	225,770	2,709,240
사무원	1	2,919,120	0	243,260	2,919,120
간호조무사	1	2,467,500	0	205,625	2,467,500
요양보호사	1	2,555,040	0	212,920	2,555,040
요양보호사	1	2,546,160	0	212,180	2,546,160
요양보호사	1	2,459,520	0	204,960	2,459,520
요양보호사	1	2,388,120	0	199,010	2,388,120
조리사	1	2,223,720	0	185,310	2,223,720
운전원	1	1,066,680	0	88,890	1,066,680
간호조무사	1	1,066,680	0	88,890	1,066,680
요양보호사	1	1,066,680	0	88,890	1,066,680
요양보호사	1	1,373,520	0	114,460	1,373,520
계	14	-	-	-	33,348,060

* 월 기본노임 원 단위 60원 절사 (간호조무사 월 기본노임 건 적용)

마. 사회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산출기준 ㉑	공시요율 ㉒ (사업주부담, 2025년 기준)	금 액 ㉓=㉑×㉒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본급+제수당+급여성임금) 400,176,760	3.545%	14,186,260
국민연금보험료		4.5%	18,007,950
산재보험료		0.8%	3,201,410
고용보험료		1.75%	7,003,090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2.95%	1,837,120
계	-	-	44,235,830

2. 운영비(경비)

가. 여 비 : 해당사항 없음

나. 교육훈련비

(단위 : 원)

구 분 (교육명칭)	교육목적	횟수 ㉠	인원 ㉡	교육여비(1회당)		소요금액 ㉣=㉠×㉡×㉢
				산출식	단가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1	1	65,000원×1명=65,000	65,000	65,00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1	2	30,000원×1명=30,000	30,000	60,00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보수교육	1	2	28,000원×1명=28,000	28,000	56,000
외부교육	역량강화 교육	1	14	300,000원×1명=300,000	300,000	4,200,000
계	-	4	19	-	-	4,381,000

다. 임차료

(단위 : 원)

임차대상	임차목적	임차횟수 ㉠	기준단가 (1회당) ㉡	소요금액 ㉣=㉠×㉡
센터 무인경비 등	보안관리	12	215,000	2,580,000
복합기 관리(2대-대1,소1)	업무용	12	200,000	2,400,000
정수기 관리(3대)	음용수	12	49,710	596,520
계	-	-	-	5,576,520

라. 우편 통신비

(1) 우편료 : 해당없음

(2) 전화·통신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목적	사용수량			기준단가 (1건당)	소요금액
		통/월	월수	소계		
전화요금	이용자 및 보호자 상담	1	12	5,720	5,720	68,640
팩스요금	공문 수·송신	1	12	5,990	5,990	71,880
인터넷 사용	이용자 파일 작성 및 각종 행정 작업	1	12	89,500	89,500	1,074,000
계		3	36	101,210	101,210	1,214,520

* 2025년 평균 기준

마. 유인물비 : 해당없음

바. 소모품비(피복비 등)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조사1	조사2	조사3	최저단가	금 액
종량제봉투	10L	장	15	-	-	-	14,000	210,000
	3L	장	15	-	-	-	3,000	45,000
	75L	장	15	-	-	-	20,000	300,000
A4용지	75g	BOX	28	-	-	-	24,900	697,200
점보를	-	BOX	16	-	-	-	89,000	1,424,000
사무용품 외	-	건	25	-	-	-	148,800	3,720,000
주방용품 외	-	건	12	-	-	-	250,000	3,000,000
계	-	-	126	-	-	-	549,700	9,396,200

사. 기타 경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기본단가 ㉑	금 액 ㉒=㉑×㉓	관련근거	
		산출식	수량 ㉓				
수선유지비	소방안전점검	275,000원×1회 = 275,000	1	275,000	275,000	연 1회	
	승강기 안전검사	225,940원×1회 = 225,940	1	225,940	225,940		
	소프트웨어 구입	한컴오피스 30,690원×1개 = 30,690원 V3프로그램 24,200원×1개 = 24,200	6	54,890	329,340		
	승강기 유지관리	120,000원×1회 = 120,000	12	120,000	1,440,000	월 1회	
	기관 운영 유지비 (시설장비물품 등)	778,180원×1회 = 778,180	4	778,180	3,112,720	분기 1회	
	소 계	-	-	-	5,383,000	-	
차량유지비	유류대	모닝	25,800원×1개월 = 25,800	12	25,800	309,600	월 1회
		스타렉스	531,600원×1개월 = 531,600	12	531,600	6,379,200	
		스타리아	252,600원×1개월 = 252,600	12	252,600	3,031,200	
	관리비	모닝 자동차 검사	132,000원×1회 = 132,000	1	132,000	132,000	연 1회
		스타렉스 자동차 검사 외	81,600원×1회 = 81,600	11	81,600	897,600	상시
		스타리아 자동차 검사 외	224,180원×1회 = 224,180	3	224,180	672,540	
	소 계	-	-	-	11,422,140	-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475,200원×1회 = 475,200	12	475,200	5,702,400	월 1회	
	케이블수신료	33,050원×1회 = 33,050	12	33,050	396,600		
	도시가스연료비	309,180원×1회 = 309,180	12	309,180	3,710,160		
	상하수도료	302,060원×1회 = 302,060	6	302,060	1,812,360	2달에 1회	
	재가협회비	180,000원×1회 = 180,000	4	180,000	720,000	분기 1회	
	기타 공과 잡비	정화조 청소	90,840원×1회 = 90,840	1	90,840	90,840	연 1회
		자동차세	59,120원×1회 = 59,120	3	59,120	177,360	
	화재보험	73,400원×1회 = 73,400	1	73,400	73,400	연 1회	
	가스보험	20,000원×1회 = 20,000	1	20,000	20,000		
	자동차보험	950,000원×1 = 950,000	3	950,000	2,850,000		
	배상책임보험	1,800,000원×1회 = 1,800,000	1	1,800,000	1,800,000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20,000원×1회 = 20,000	1	20,000	20,000		
	신원보증보험	30,000원×1회 = 30,000	2	30,000	60,000		
	소 계	-	-	-	17,433,120		-
기 타 (기타운영비)	직원연수 외 (피복, 회의, 복리후생등)	-	-	-	25,000,000		
	소 계	-	-	-	25,000,000	-	
합 계		-	-	-	59,238,260	-	

3.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금액	비고 (관련근거 등)
프로그램 사업비	인지프로그램 강사료	책놀이 50,000원×1명×4회×12개월=2,400,000 음악치료 및 미술치료 60,000원×2명×4회×12개월=5,760,000 치료레크레이션 45,000원×1명×4회×12개월=2,160,000	10,320,000	2025년 평균 반영
	인지프로그램 재료비	미술치료 50,000원×1회×12개월=600,000 종이접기 3,000원×28명×4회×12개월=4,032,000	4,632,000	
	신체프로그램	신체물품 200,000원×4분기=800,000	800,000	
	특별활동사업비	사회적응나들이 1,200,000원×1회=1,200,000	1,200,000	
		명절행사 및 어버이날행사, 생신잔치등 500,000원×5회=2,500,000	2,500,000	
	특화사업비	연말행사 및 치유프로그램, 원예활동등 700,000원×4건=2,800,000	2,800,000	
	지역복지사업비	자원봉사관리비 100,000원×4회=400,000 홍보사업비 1,500,000원×1회=1,500,000	1,900,000	
	가족지원사업비	가족간담회 및 자조모임 300,000원×2회=600,000	600,000	
	소 계	24,152,000	24,152,000	-
기 타	부식대금	4,500원×17,040회=76,680,000	76,680,000	2025년 평균 반영
	의료비	의약품 구입 외 50,000원×4회=200,000	200,000	
	위생용품	위생용품 100,000원×4회=400,000	400,000	
	소 계	77,280,000	77,280,000	
합 계		101,432,000	101,432,000	-

4. 이용료

(단위 : 원)

항목	단가	수량 (월 인원)	기간 (월)	수입액	비고
장기요양 급여수입	등급기준	평일28 야간19 토요15	12	340,364,400	현원 30명이나 결석으로 인한 평균 28명 적용
본인부담금수입	등급기준	평일28 야간19 토요15	12	58,597,730	
계	-	-	-	398,962,130	-

5. 사용료 - 해당사항 없음(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 사용)

6. 기타수입

(단위: 원)

항목	단가	수량 (월 인원)	기간 (월)	수입액	비고
식재료비 (중식)	4,500	28	4,500원×28명×20일×12개월	30,240,000	현원 30명이나 결석으로 인한 평균 28명 적용
식재료비(석식)	4,500	19	4,500원×19명×20일×12개월	20,520,000	
식재료비(간식)	1,000	28	1,000원 ×2회×28명×20일×12개월	13,440,000	
토요 식재료비(중식*간식)	6,500	15	6,500원×15명×4주×12개월	4,680,000	
가산금 (프로그램)	700,000	-	700,000원×12개월	8,400,000	평균적용
가산금 (인력가산)	4,000,000	-	4,000,000원×12개월	48,000,000	평균적용
잡수입(직원*기타인력) (직원식재료비 수입)	4,500	10	4,500원×10명×20일×12개월	10,800,000	휴가 등 평균 일수 적용
계	-	-	-	136,080,000	-